

2024년 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시설물 관리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시설물 운용 및 관리에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 용역 수행 및 관리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모색 등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가. 감사대상 : 전부서, 시설물 관리분야
- 나. 감사방법 : 대면·현장 감사실시

3. 감사범위 : 2023년 1월 ~ 2024년 8월까지 추진한 업무

4. 감사중점

- 가. 각종 시설물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 나. 시설물 장애 및 사고처리, 취약개소 관리의 적정성
- 다. 용역수행 및 관리의 적법성 및 합리성
-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 적정성
- 다.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여부
- 라. 업무 수행시 법령·사규 준수여부 및 불합리한 관행 유무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 가. 감사기간 : 2024. 10. 7. ~ 11. 1. (기간중 19일)
- 나.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원)		비고
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계	주의	계	회수	
11	-	2	1	2	2	3	1	-	-	1	1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	<p>■ 용역사업 업무절차 준수 소홀</p> <p>○○○○팀에서는 역사 해충 방역 용역사업 추진 중 준공계를 접수한 이후 납품지시를 하였고, 전 역(00개)에서 보고한 전자문서 ‘역사 방역 검수일지’의 작업날짜가 일부 누락되고, 검수조서 작성일을 넘겨 보고하였음에도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지방계약법」에 따른 업무절차에 맞지 않게 관련 업무를 추진함</p> <p>또한, 역사에서 방역 용역을 실시하면, 현장검수자가 방역업체로부터 받은 문서를 수기결재로 역장에게 보고하고, 월말에 ○○○○팀에 전자결재로 보고하면서, 수기결재 문서가 첨부되지 않다 보니,</p> <p>기안자가 현장검수자가 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날짜별 방역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일부 수기결재 문서 분실, 작업날짜 보고 누락, 보고 기한 경과 등 서류 작성 및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p> <p>이에 전자결재 문서에 수기결재 문서를 첨부하여 업무누수가 없도록 문서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업무절차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하며, 문서관리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p>	주의 개선
2	<p>■ 하자관리 업무 소홀</p>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주의

연계 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그런데 ◎◎팀에서는 하자보수 대상 계약 건에 대하여 MIS 하자시작일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정기 하자검사를 누락 하였음</p> <p>그 결과, 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조치 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함</p>	
3	<p>■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정산 부적정</p> <p>「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은 실제 투입 일수로 최종 정산처리하여야 함</p> <p>그런데, ◇◇팀은 용역 준공정산 시 근무상황 일지에 철도운영안전관리자가 3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가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선임비용 4일 치 요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1일 치만큼의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이 감액되지 않아 총 321,000원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함</p> <p>【조치요구 사항】</p> <p>과다 지급된 용역비에 대하여 “회수” 하시기 바람</p>	시정 (회수)
4	<p>■ 방역 용역 수행업체 적격여부 확인 보완</p> <p>「감염병예방법」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소독업자,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전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p> <p>그런데, 방역 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 △△팀에서는 용역 착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자, 소독업무 종사자의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음</p> <p>이에, 향후 방역 용역 착수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소독에 관한 교육이수 현황을 용역 착수 전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소독에 관한 교육이수 현황을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시기 바람</p>	개선

연예 의견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5	<p>■ ◇◇역 공실점포 활용방안 마련</p> <p>1호선 개통 시 ◇◇역에 임대 상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임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p> <p>해당 상가는 장기간 공실로 인해 역사 미관 저해와 임대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현업부서에서는 물품보관창고 활용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p> <p>▷▷▷팀에서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에 관리 전환을 하는 등 자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해당 공실점포에 대하여 자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p>	권고
6	<p>■ ◎◎기지 종합관리동 3층 유휴 공간 활용방안 마련</p> <p>현재 ◎◎기지 종합관리동 3층 식당공간은 식당운업을 하지 않고 유휴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공간의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p> <p>따라서, 향후 ○호선 건설 영향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휴 공간 없이 시설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유휴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당공간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p>	권고
7	<p>■ 장애 및 사고 발생내역 MIS 등록 및 활용</p> <p>「사고 및 장애처리내규」 제6장 제41조(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따르면, “철도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량, 제도개선, 교육훈련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주관부서에서 수립·시행하여 동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p> <p>▽▽▽팀의 많은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 구내 사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고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p> <p>기 구축된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의 [장애 및 사고관리] 프로그램에 역 구내 사상사고 발생내역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활용하여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등 역 구내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p>	통보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조치요구 사항】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의 [장애 및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하여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p>	
8	<p>■ AAAA 연결통로 시설물 관리주체 불명확 AAAA 개관('15.11.25.) 시점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AAAA과 BBBB역 간 ‘연결 통로 공용 공간’의 시설물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임 현재처럼 시설물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민원이나 사고 발생 시 민원응대 지연과 능력 대처가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결통로 공용 공간’의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역사 내 화재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대처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p>	통보
9	<p>■ 환승 편의를 위한 <<역 자전거보관대 정비 <<역 4번 출입구 썸큰 측 외부 자전거보관대는 만차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자전거보관대 주변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거치된 자전거가 다수 있어 자전거 이용승객에게 불편함을 주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반면, 4번 출입구에 인접한 3번 출입구 측에도 자전거보관대가 있으나, 자전거보관대 후면에 자전거를 주차하기 곤란할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식재가 근접하다보니 자전거보관대 이용이 어려워 자전거 주차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 따라서, >>>팀에서는 승객수송과 환승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3번 출입구와 4번 출입구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의 이용량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전거 이용승객과 역사 이용승객이 쾌적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 지하철 이용승객의 쾌적한 역사 이용을 위해 도산역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하시기 바람</p>	통보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0	<p>■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미숙</p> <p>△△팀에서는 조경창고에서 소량위험물에 해당하는 양의 휘발유를 저장 또는 취급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III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과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였음</p> <p>이에 △△팀은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인지하고, 감사기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III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과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 2개를 조경창고에 비치하였음 (조치완료 : △△팀-00000호, 2024.11.01.)</p> <p>【조치요구 사항】 관련 규정을 감사기간 중 인지하여 조치완료 하였음</p>	현지 조치